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성 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84
----------	---------

발의연월일: 2020년 9월 일

발 의 자: 박성호, 정정희, 신낙형, 김현희  
송순효, 김용원, 황영호, 김동협  
이충현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무료 예방  
접종의 대상자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의 의료기관 위탁을 위한 법적근거 및 세부지침을 명확히  
함(안 제9조)
- 나. 임시예방접종의 시행 및 무료접종의 대상을 명시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6조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추경예산 편성

다. 협조부서: 보건행정과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2020. 9. 4. ~ 2020. 9. 8.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본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접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13세 이상)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만 50세 이상)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만 50세 이상)
2. 접종일 현재 강서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 나.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필수예방접종)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 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p> <p>③ (생 략) <u>&lt;신 설&gt;</u></p>	<p>제9조(필수예방접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본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9조의2(임시예방접종) ① 구청 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u></p> <p><u>1. 접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u></p> <p style="padding-left: 40px;"><u>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3세 이상)</u></p>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만 50세 이상)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만  
50세 이상)

2. 집종일 현재 강서구 소재 사  
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  
인력 등

나.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 종사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  
·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 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  
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